



## 국민건강보험공단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요양기관 본인확인 시 유의사항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제도 시행('24.5.20.) 이후 외국인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자에 대한 본인확인 미실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, 증도용 등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확인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- ◆ 신분증 제시 환자의 본인여부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 
※ 본인확인여부(Y/N)는 전산 또는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보관(추후 이행여부 확인 시 증빙 자료로 활용)
- ◆ 특히,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에는 더욱 본인확인 철저
- ◆ 본인확인 미이행 시 과태료(100만원 이하)가 부과 될 수 있으며, 증도용 발견 시 본인확인 미확인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 연대고지 될 수 있음
- ◆ 여성폭력피해자 등 보호시설 입소자의 경우 의료급여증이나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로 본인확인하며, 별도의 추가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(붙임 참고)

3. 또한, 제도 관련 Q&A 등 관련 공지사항은 아래 경로를 통해 업데이트 되오니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◆ 요양기관 정보마당 > 공지사항
- ◆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> 국민과함께 > 뉴스/소식 > 공지사항

붙임 여성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진료 절차 안내 1부. 끝.

##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한 의사협회장, 대한치과 의사협회장, 대한간호사협회장,  
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

대리 이재희

팀장 이완근

부장 한세정

전결 11/11

협조자

시행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 (2024.11.11.) 접수 ( )  
진부(TF)-599

우 2646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77, 10층(반곡동, 건강보험공단 별관) / <http://www.nhis.or.kr>

전화 033-736-3387 전승 033-749-9618 / 191928@nhis.or.kr / 비공개(7)

**붙임**

**여성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진료 절차 안내**

| 진료 절차 | 건강보험 적용 진료 | 개인정보보호 요구자 |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      |            | 의료급여 대상    | 비급여 대상 |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본인확인 및 진료접수 | <u>신분증</u> 또는 <u>건강보험증</u> 확인 | <u>의료급여증</u> 확인<br>(추가 신분증 확인 불필요)<br>※ 환자 요구 시, 전산관리번호로 진료접수 | <u>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</u> 확인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별도 전산관리번호 발급 증명서 없음   |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본인확인 제도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

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진료        | 진료기록 및 처방전 등 작성<br>(주민등록번호 기준) | 진료기록 및 처방전 등 작성<br>(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기준) |
| - 처방(처방전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- 진료기록 관리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

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수납 | 진료비<br>본인부담금 납부 | 진료비<br>본인부담금 납부 | 진료비<br>전액 납부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


|    |  |  |
|----|--|--|
| 귀가 |  |  |
|----|--|--|



# 여 성 가 족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보호시설 입소자 진료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협조 요청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건강보험 본인확인제도 전면시행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접수 시 본인확인 예외대상에 대해서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, 가정폭력·성폭력 등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에 입소중인 피해자들이 신분노출 우려로 의료기관 이용을 포기하거나, 별도의 증명서 요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민원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.

※ 동 민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(' 24.8.1개최)시 개선 필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바 있음

3. 이에, 보호시설·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한 바, 의료기관이 ①보호시설 입소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, ②건강보험 본인확인제도 과잉적용 등 의료기관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
4. 이에, 귀 협회 소속 의료기관이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의 의료이용을 위한 진료 접수 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'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보호제도'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및 홍보를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< 홍보 및 안내 요청사항 >

- 가.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진료 접수 시 현행 법령에 따른 규정 준수
  - ▶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요구 불필요
    - ※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(건강보험증) 제4항  
(참고)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Q&A 11(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) "비급여로 진료 받는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지?" => 본인확인 대상 아님
    - ♣ (관련문의)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 문의 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
  - ▶ 의료급여증을 소지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으로 신분 확인하므로 주민등록증 등 별도의 신분증 제시 요구 불필요
    - ※ 관련근거 : 의료급여법 제8조(의료급여증)
    - ♣ (관련문의) 의료급여증 소지자 본인확인 관련 문의 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
  - ▶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진료접수 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 허용(건강보험 요양급여 진료 자는 적용 제외)
    - ※ 관련근거 :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(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) 제1항 1.가
    - ♣ (관련문의)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용 진료접수 관련 문의 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

붙임 : 1. 여성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진료 절차 1부.  
2. 보호시설 입소자 진료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(웹포스터) 1부. 끝.

여성가족부장관

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치과협회장, 대한한 의사협회장

사무관

박시영

가정폭력스토킹 전결 2024. 11. 11.

방지과장

박선욱

협조자

시행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-2877

접수

우 03171

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(여성가족부)

/ <http://mogef.go.kr>

전화번호 02-2100-6422

팩스번호 02-2100-6484

/ [park081717@korea.kr](mailto:park081717@korea.kr)

/ 대국민 공개

# 붙임

## 여성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진료 절차

| 진료 절차 | 건강보험 적용 진료 | 개인정보보호 요구자 |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      |            | 의료급여 대상    | 비급여 대상 |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본인확인 및 진료접수 |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확인 | <b>의료급여증 확인</b><br>(추가 신분증 확인 불필요)<br>※ 환자 요구 시, 전산관리번호로 진료접수 | <b>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진료접수</b> |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별도 전산관리번호 발급 증명서 없음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관련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 
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

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진료                     | 진료기록 및 처방전 등 작성<br>(주민등록번호 기준) | 진료기록 및 처방전 등 작성<br>(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기준) |  |
| - 처방(처방전)<br>- 진료기록 관리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

|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수납 | 진료비 본인부담금 납부 | 진료비 본인부담금 납부 | 진료비 전액 납부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



|    |  |  |
|----|--|--|
| 귀가 |  |  |
|----|--|--|

# 보호시설 입소자

## 진료접수시 유의사항 안내



### 진료 접수

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진료접수 가능합니다.

※ 관련근거 :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(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) 제1항1.가 및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(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)



### 본인 확인

#### + 의료급여증 진료자

- 의료급여증을 소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신분증 제시요구는 불필요합니다.

※ 관련근거 : 의료급여법 제8조(의료급여증)

#### + 비급여 진료자(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자)

- 비급여 진료자는 신분증 제시 대상자가 아닙니다.  
(건강보험 본인확인 대상 아님)

※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(건강보험증) 제4항  
(참고)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Q&A 11(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)

"비급여로 진료 받는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지?"

본인확인 대상 아님



문의 : 의료급여·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관련 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건강보험본인확인 관련 -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☎1577-1000)



여성가족부

#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진료접수 관련 제도 안내

병원진료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로 폭력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어 반복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보호조치 시행 중이나, 건강보험 본인확인제 시행으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신분증 확인 등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 및 분쟁 증가

## 1] 의료기관 협조요청 배경

- 건강보험 본인확인제도 시행에 따른 보호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이용환경 악화

| 본인확인제도 시행 전   | 본인확인제도 시행 후  |
|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증으로 진료 접수</li> <li>▶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입소자는 전산관리번호*로 진료 접수 가능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의료급여증 소지자에 대해 추가로 신분증 확인</li> <li>▶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진료접수 거부사례 다수 발생</li> </ul> |

### ※ 여성가족부 소관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의료지원 현황

- ① 저소득 입소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시설 의료급여 수급자로 정해지면 의료급여증을 제시하고 의료기관 진료
- ②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전액 자비로 치료(소요된 의료비는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보전처리)
  - 이 경우, 입소자 신변보호를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피해자는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해 전산관리번호\*를 의료기관 진료접수 등에 활용

#### <참고> 보호시설 입소자의 의료기관 이용시 적용되는 제도 현황

- △ **(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)**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해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(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)에 따라 주민번호 대신 발급하는 번호(13자리)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에 따라 병원 진료 시 주민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기재 가능
- △ **(의료급여증)**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배부되는 증서. 병원 진료 제시하면 별도 본인확인 없이 의료기관 진료 가능(의료급여법 제8조(의료급여증))
- △ **(건강보험 급여제한)** 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급여 제한

## □ 문제 발생 원인 및 해결방안

- (발생원인) 건강보험 본인확인제도 이행 병원의 과잉 대응 및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에 대한 이해 부족

- ①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한정된 것으로 진료접수 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\*, 비급여자인 경우 본인확인 예외 대상임

\*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 제시로 본인확인 가능함

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건강보험 본인확인제도(Q&A)】

Q11: 비급여로 진료 받는 환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지?

(A11) 비급여 진료의 경우 본인확인 대상이 아님

- ② 의료기관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이해 부족으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 접수하고자 하는 환자요구 거부

※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(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) 제1항 1.가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 가능

## ②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진료 접수 방법

- (의료급여수급증 소지자) 환자가 진료접수 시 의료급여증을 제시한 경우 추가적인 신분증 확인 불필요
- (비급여 진료 요구자)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이므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요구 불필요. 환자가 요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전산관리번호(13자리 숫자로 구성)로 진료접수
- (건강보험 고객센터 활용) 진료접수과정에서 건강보험 본인확인제도와 관련한 문의 발생 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

# 참고 1

## 여성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진료 절차 도표

| 진료 절차 | 건강보험 적용 진료 | 개인정보보호 요구자 |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      |            | 의료급여 대상    | 비급여 대상 |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|
| 본인확인 및<br>진료접수 |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<br>확인 | 의료급여증 확인<br>(추가 신분증 확인 불필요)<br><br>※ 환자 요구 시,<br>전산관리번호로 진료접수 |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확인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별도 전산관리번호 발급 증명서 없음   |                |

※ 관련문의: 여성가족부 고객센터( - )  
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

↓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진료                     | 진료기록 및 처방전 등<br>작성<br>(주민등록번호 기준) | 진료기록 및 처방전 등 작성<br>(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기준) |
| - 처방(처방전)<br>- 진료기록 관리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↓

|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수납 | 진료비<br>본인부담금 납부 | 진료비<br>본인부담금 납부 | 진료비<br>전액 납부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
↓

|    |  |  |
|----|--|--|
| 귀가 |  |  |
|----|--|--|

## 참고 2

##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

### □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

- (목적)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숙식제공 등 단기·중장기 보호, 신체적·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·치료, 의료·법률 지원 및 자립자활 교육 등 지원
- (법적근거)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7조
- (운영주체) 국가 또는 지자체,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
- (지역별 시설현황)

'24.9월 기준 (단위: 개소)

| 구분     | 합계 | 서울 | 부산 | 대구 | 인천 | 광주 | 대전 | 울산 | 경기 | 강원 | 충북 | 충남 | 전북 | 전남 | 경북 | 경남 | 제주 |
|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전체     | 66 | 12 | 3  | 3  | 1  | 4  | 1  | 1  | 11 | 5  | 3  | 4  | 4  | 4  | 2  | 6  | 2  |
| 일반시설   | 42 | 8  | 2  | 2  | 1  | 2  | -  | 1  | 11 | 4  | 1  | 1  | 2  | 2  | 2  | 3  | -  |
| 가족보호시설 | 24 | 4  | 1  | 1  | -  | 2  | 1  | -  | -  | 1  | 2  | 3  | 2  | 2  | -  | 3  | 2  |

### □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

- (목적)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인권보호
- (근거)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~제17조
- (운영주체) 국가 또는 지자체,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
- (지역별 시설현황)

'24.9월 기준 (단위: 개소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| 합계       | 서울 | 부산       | 대구 | 인천 | 광주       | 대전 | 울산 | 세종 | 경기 | 강원 | 충북       | 충남 | 전북 | 전남 | 경북 | 경남 | 제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전체                      | 35       | 2  | 3        | 1  | 2  | 3        | 2  | 1  | -  | 4  | 1  | 3        | 1  | 2  | 2  | 2  | 3  | 3  |
| 일반                      | 17       | 2  | 1        | 1  | 1  | 1        | -  | 1  | -  | 3  | 1  | 1        |    | 2  | 1  | -  | -  | 2  |
| 장애인                     | 8        | -  | 1        | -  | -  | 1        | 1  | -  | -  | -  | -  | 1        | 1  | -  | 1  | -  | 1  | 1  |
| 특별지원                    | 4        | -  | -        | -  | -  | -        | 1  | -  | -  | 1  | -  | -        | -  | -  | -  | 1  | 1  | -  |
| 자립지원<br>공동생활시설<br>(장애인) | 6<br>(3) | -  | 1<br>(1) | -  | 1  | 1<br>(1) | -  | -  | -  | -  | -  | 1<br>(1) | -  | -  | -  | 1  | 1  | -  |

\* ( )는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



### 참고 3

##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운영 현황

- **(정의)**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발급하는 번호로서,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각급 공공기관과 업무연계 및 편의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로 구성
- **(활용)** 「사회보장급여법」에 따른 보장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책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 시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 시,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 시
- **(부여 대상)**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
  - ①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
  - ②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
  - 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
  - ④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,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
- **(구성체계)**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산관리번호 구성   | 적용대상자   |  |
|---|---|---|--|
| ○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자 | ①②③④⑤⑥-⑦⑧⑨⑩⑪⑫⑬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</li> <li>○ 개인의 사생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시설에 수용된 자가 본인이 요청할 경우 (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,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, 미혼모 시설 등)</li> </ul> |  |
|   | ①-②   |   | 출생연도 마지막 2자리   |
|   | ③   |   | 자료구분(5)  |
|   | ④-⑥   |   | 일련번호   |
|   | ⑦   |   | 성별구분<br>- (내국인) 남 : 1, 3 / 여 : 2, 4<br>- (외국인) 남 : 5, 7 / 여 : 6, 8<br>* 1900년대 출생(남: 1, 5/ 여: 2, 6)<br>2000년대 출생(남: 3, 7/ 여: 4, 8) |
|   | ⑧-⑨   |   | 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   |
|   | ⑩-⑬   |   | 시설기호   |
|   | <예시><br>'04.1.15일 ○○시 감로당(2349)에 입소된 150번째 노인(1930.3.30일생, 여자)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?<br>⇒ 305150-2042349 |   |  |

**의료급여법 제8조(의료급여증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을 갈음하여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(이하 "의료급여기관"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수급권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(이하 "신분증명서"라 한다)로 의료급여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(이하 생략)

**의료법 제14조(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)**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,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진료기록부

가.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·성명·연락처·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. 다만, 진료를 받은 사람이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기록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기록할 수 있고, 주소 및 연락처를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.(이하 생략)

※ 진단서(제9조), 처방전(제12조) 관련 동일한 내용 규정

**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(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)** ① 보장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.

1.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
2.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(이하 생략)

**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(건강보험증)**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11.>

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(이하 "요양기관"이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(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)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이하 "신분증명서"라 한다)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2. 26.>

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이하 생략)

(앞쪽)

**지켜야 할 사항**

1. 급여를 받을 때에는 이 의료급여증 또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.
2. 이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, 빌려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.
3.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사전 연장승인 없이 의료급여일수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4. 단계별 절차(의원→병원→대학병원)를 거치지 않은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
## 의료급여증

이 의료급여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

송부처: 뒤쪽의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주소 참조

190mm×127mm(보존용지(1종) 120g/m<sup>2</sup>)

(뒤쪽)

| 세 대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생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자격취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보장기관<br>기호 및 명칭                 |  |
| 읍·면·동<br>(사회복지시설)               |  |
| 의료급여증<br>번호                     |  |
| ○○○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<br>·시장·군수·구청장 |  |
| (주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(전화번호)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| 의료급여를 받으실 분 |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
| 성 명         | 생년월일 | 자격<br>취득일 |
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|
| 발급일자:       |      |           |

190mm×127mm(보존용지(1종) 120g/m<sup>2</sup>)

## 의료급여증명서

발급번호 :

|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보 장 기 관 명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 보장기관기호   |         |
| 세대주  | 성 명    |              |        | 의료급여종별   | (    )종 |
|  | 주민등록번호 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| 주 소    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부 양<br>가 족   | 성 명    | 세대주와<br>의 관계 | 주민등록번호 | 개일별자격취득일 |         |
|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최 초 자 격 취 득 일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<p>위의 사람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임을 증명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(시장·군수·구청장) 인</p>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 <p>비 고</p> <p>1. 이 증명서는 의료급여증이 발급될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2. 의료급여기관에서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진료를 하여야 합니다.</p>  |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
210mm×297mm

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

※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경우 주민번호 대신 기재